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

議案 番號	173
----------	-----

發議年月日：1992年 10月20日

發 議 者：議會 運營委員長

1. 主 文

大田直轄市 議會는 國會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 監査 拒否 決議案을 別添 內容과 같이 採擇한다.

2. 提 案 理 由

- 國政 監査는 國政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에 의거 國政 全般에 관하여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每年 定期會 集會期日의 다음 날로부터 20日間 實施하도록 되어 있으며, 監査 對象中 市道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國家委任事務에 한하여 國政 監査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으나,
- 地方自治團體에 委任된 國家 委任 事務라 할지라도 大部分 地方 豫算에서 負擔하고 있으며, 地方自治團體는 綜合 助長 行政 機關으로써 國家委任事務와 地方 固有事務의 區分이 模糊할 뿐아니라
- 地方自治國體는 監査院, 內務部등 監査 機關의 監査와 國會 國政 監査, 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 等 重複되는 監査로 인하여 엄청난 行政力 浪費를 招來하고 있음.

- '92年度 國會 教育 體育 靑少年 委員會 國政 監查 計劃에 大田直轄市教育廳이 包含되었으나, 地方自治制 實施 以前에는 國會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查權을 갖고 一般 行政에 대한 牽制 機能을 行使하였지만 地方議會가 構成되어 地方自治制가 實施된지 1年이 지난 現 時點에서의 大田直轄市 教育廳에 대한 '92年度 國政 監查는 當爲性이 없으므로 國政 監查를 拒否함.
- 國會와 地方自治團體의 關係는 指揮 監督의 上下 關係가 아니며, 國會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干涉은 地方議會 活動을 萎縮시키는 바, 地方自治團體의 國會 監查權은 地方議會로 委任되어야 한다는 趣旨에서 本 決議案을 採擇기로 提案함.

添 附：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查 拒否 決議案 1부 끝.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

大田直轄市 議會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會의 國政監査를 다음과 같은 事由로 拒否한다.

1. 地方의 일은 地方에 맡긴다는 地方自治의 基本 理念에 違背되고
2. 國家委任事務와 地方固有事務와의 區分이 模糊하기 때문에 國政監査에서 國家委任事務에 局限한다는 것이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며
3. 國家委任事務의 境遇도 그 費用의 大部分을 地方自治團體에서 負擔하고 있으며
4. 國政監査를 받지 않더라도 監査院, 內務部, 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받고 있어 지나친 重複 監査로 行政 浪費와 業務支障이 地方自治制 實施 以前보다 더 加重될 것이 分明하고
5. 現行法上 國家委任事務에 對한 國政監査 權限이 國會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法을 地方自治 實施라는 與件變化에 따라 改正의 先行이 保障되지 않는 한
6. 大田直轄市 議會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를 全面 拒否하며 國會 教育體育 靑少年 委員會의 '92年度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도 拒否하기로 決議한다.

1992 . 10 .

大田直轄市議會